

##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송의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송의학원(송의여자대학교)의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송의학원(송의여자대학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송의학원(송의여자대학교)의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1. 송의여자대학교 미등기자산의 검토  
별첨: 학교법인 송의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별지 제2호서식)
2. 송의대학교 예산 및 결산서의 검토
3. 송의대학교 결산서의 검토  
별첨: 송의여자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별지 제3호서식)

2021년 4 월 일

학교법인 송의학원  
감사 김 학 선(인)

감사 박 동 진(인)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11556호)

피감사자 (입회인)

송의여자대학교

총무처장 박 봉 화(인)

학교법인 송의학원

사무국장 강석주(인)

[별지 제2호 서식]

## 학교법인 송의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2020 회계연도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법인 회계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
<p>1. 송의대학교 미등기자산의 검토</p> <p>가. 당 송의대학교의 일부 체육관, 유치원, 식당, 학생회관이 공사가 진행 완료되어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관계 기관에서 준공 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등기가 진행되지 못함.</p> <p>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권리 관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요청</p> <p>2. 이사회 조직이 학원 정관에 맞게 구성되었으며, 또한 이사회는 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적법하게 운영되었음.</p> <p>3. 이사회는 규정대로 항상 7일 이전에 항상 소집되었고, 회의 진행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음</p> <p>4. 이사회 회의록 작성은 규정대로 되어 있으며, 참석 위원들의 서명이 잘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공개되었음</p> <p>5. 이사회 소집 목적에 명시되지 않은 의안이 부의되어 심의 의결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음</p> <p>6. 각 학교에서 제청된 교원 임면 및 인사에 관한 안건은 정관 규정에 의해 절차대로 처리되었음</p> <p>7. 이사회 안건 중 위원의 제척 사유가 될 만한 것은 없었음</p>	<p>1. 송의여자대학교 미등기자산 시정조치계획</p> <p>가. 당 송의여자대학교의 미등기자산의 경우 1965년부터 1984년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관할청의 건축 허가로 건축한 건물이지만 건물 준공후 행정 절차를 이행하려 하였으나 당시 건축법에 따라 건물 부지 위치가 풍치지구인 관계로 건물 준공 허가는 나지 않았으며 등기 절차도 이행하지 못하였음.</p> <p>미등기자산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였으나 현행법으로는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항임</p> <p>본 지적건이 포함된 감사 처분 미이행에 따른 행정 처분(2020학년도 입학정원의 5% 모집정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로 미등기자산의 권리 관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p>2. 특이사항 없음</p> <p>3. 특이사항 없음</p> <p>4. 특이사항 없음</p> <p>5. 특이사항 없음</p> <p>6. 특이사항 없음</p> <p>7. 특이사항 없음</p>

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송의학원 이사장



직인 (사인)

## 송의여자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2020회계연도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지적사항(내용) : 학교 교비회계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
<p>1. 송의여자대학교 예산 및 결산서의 검토</p> <p>가. 송의여자대학교 예산 및 결산서 상, 예산은 다음의 원칙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조3항 예산편성요령에 따르면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 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p> <p>나. 송의여자대학교 예산 및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송의여자대학교 결산서에 등록금회계 교내장학금은 학생지원비 예산과 비등록금회계 시간강의료 및 퇴직금은 법정 부담금 간 예산전용하고 있음.</p>	<p>1. 예산편성 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조3항(예산편성요령)에 따라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편성하였으나 추가 경정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목간 전용 하여 결산을 하였음.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예산에 전용)에 따라 결산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임. 추가 경정예산 편성 이후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p> <p>가. 등록금회계 교내장학금 : 코로나로 인하여 2학기분 특별장학금 편성하여 21년 2월에 지급</p> <p>나. 비등록금회계 시간강의료 및 퇴직금 : 비등록금회계는 국고보조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 추경 이후 국고보조금 수령에 따라 목간 전용이 발생함</p>
<p>피감사기관장 <b>송의여자대학교</b> 총장 <b>구건서</b> 직인 (사인)</p>	





## 송의여자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2020회계연도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지적사항(내용) : 학교 교비회계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
<p>2. 송의여자대학교 결산서의 검토</p> <p>가. 건축물 관리비의 지출이 실제 유형자산의 취득 성격(본관 강의 A동 및 강의 C동 환경개선공사비)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예산편성을 건축물 관리비 성격과 유형자산 취득의 성격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p> <p>학교회계의 경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르고 만약 동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에서 규정하는 하지 않는 내용은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함.</p> <p>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질의회신 01-150, 처분손익 실현 기준일</p> <p>(1) 잔금청산 일 (2) 소유권이전등기일 (3) 사용하기로 약정한 날</p> <p>나. 송의여자대학교의 경우, 해당 자산이 취득 대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잔금 청산일을 취득 시기로 하여야 하지만, 당 송의여자대학교의 경우 잔금청산 시점이 각case 마다 상이한바, 송의여자대학교의 유형자산 취득 시기를 최종 검수 완료한 일자를 근거로 유형자산의 취득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p>	<p>1. 건축물 관리비의 지출이 유형자산 취득 성격 여부</p> <p>가. 각 공사가 공정별로 진행되었고, 건물의 잔여 연수가 적어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비용과 건축물 관리비의 비용 처리하는 금액과 차이가 없어 최소 부분만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p> <p>나. 앞으로 공사 진행 시 유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세부내용을 공사 담당자들에게 배포예정임</p> <p>2.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 취득 시기</p> <p>가. 잔금청산 시점이 각 case 마다 상이하여 잔금 지급이 결산 및 회계 마감일 이후 이루어지고 코로나로 인하여 유형자산을 실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결산 시점에 자본적 지출로 대체하여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였음</p> <p>나. 중간에 최종 검수 완료된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는 검수 완료일 기준으로 인식할 예정임.</p>
<p>피감사기관장 <b>송의여자대학교</b> 총장 구건서 직인 (사인)</p>	

